

#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

박봉수 / 세무회계사

##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

중소기업만이 적용되는 세금감면과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이 있습니다.

### 01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

가.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·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세액공제 대상 ·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2007.12.31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

■ 세액공제 금액 · 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의 7%

나.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할 법인세·소득세의 5~30%를 감면해 줍니다.

#### ■ 감면내용

구분	수도권 안 사업장	수도권 밖 사업장
소기업	-도·소매, 의료, 관광, 자동차정비업 10% -상기 업종의 20%	-도·소매, 의료, 관광, 자동차정비업 10% -상기 업종의 30%
중기업	-자식기반산업 10% (엔지니어링사업, 부가통신연구개발업 등)	-도·소매, 의료, 관광, 자동차정비업 5% -상기 업종의 15%

\*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봄

다.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세액공제 대상 · 물품을 구매하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,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, 판매기업발행 환어음, 판매대금추심의뢰서,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, 구매론제도,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

라.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1) 설비투자금액의 3%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.

-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·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·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%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합니다.

2) 정보화사업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.

·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하여 받은 출연금 등을 다음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동 지원금 전액을 일시손금에 산입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.

#### · 설비 종류

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 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전자상거래설비,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,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

### 02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지원제도

가.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

1)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리 손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· 소비자서비스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

- 호텔 및 여관업(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), 주점업

- 기타 오락·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• 감면내용 - 수입금액의 3%(부품·소재산업,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5%)를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비용으로 공제되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
2)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

▪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- 소비성 서비스업·호텔 및 여관업(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), 주점업·기타 오락·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▪ 감면내용 -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(조특법시행령 별표 6에 열거)에 대하여 아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(다만,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1의 규정만을 적용함)

1. (당해연도 발생액 -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) × 50%

→ 일반기업은 40%

2. 당해연도 발생금액 × 15%

3)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
• 적용대상

- 내국인이 연구시험용시설,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

• 감면내용 - 투자금액의 7%를 납부할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합니다.

4)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

•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 감면

- 적용대상

설정등록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양도 또는 대여, 기술비법의 제공(특수관계자에게 제공시 제외), 기술을 양도·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
- 감면내용

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%를 감면

• 특허권 등 취득금액 세액공제

- 적용대상

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내국인

- 세액공제내용

특허권 등 취득금액의 3%(중소기업은 7%) 상당액을 소득

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.

\* 단, 법인세(소득세) 산출세액의 10%를 한도로 합니다.

나.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는

4년간 법인세(소득세)의 50%를 감면해 줍니다.

• 적용대상

- 농공단지, 정읍제2·제3산업단지, 대불산업단지, 북평국가산업단지, 북평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

• 감면내용

- 입주 후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납부할 법인세(소득세)의 50%가 감면됩니다.

다. 산업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합니다.

1)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
• 적용대상

①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

② 첨단기술설비

③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

④ 전자상거래 설비

⑤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

⑥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

⑦ 중소기업이 타인이 보유한 위 ③내지 ⑥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

• 감면내용

- 투자금액의 3%(중소기업은 투자금액 또는 이용비용의 7%)를 납부할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합니다.

2) 환경·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
• 적용대상

- 환경보전시설, 청정생산시설,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, 축산물 또는 식품 오염방지 감시장비,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

• 감면내용

- 투자금액의 3%를 납부할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합니다.

3)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

• 적용대상

-에너지절약시설, 증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 등을 생산하는 시설(토지와 건축물 제외),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·절수 설비·절수기기의 투자금액

• 감면내용

- 투자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합니다.

4) 임시투자세액공제

-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합니다.

(2005.1.1~2005.12.31 투자분)

라.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

1)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
• 적용대상

- '04.7.1~'06.12.31 중 창업하여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

• 감면내용

-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및 그 후 3년간 법인세(소득세)의 50%를 감면합니다.

- 위 감면기간 중 다음 세액을 추가로 감면합니다.

$$\text{소득세 또는 법인세} \times \frac{\text{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} - \text{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}}{\text{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}} \times 50\%$$

2)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

• 적용대상

- 청소년 유해업종, 입시학원,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(고용유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의 경우에 한함)

• 세액공제 내용

다음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합니다.

- 고용증대의 경우

(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-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) × 1백만원

- 고용유지의 경우

고용유지 인원 수 × 50만원

\* 고용유지 인원 수

직전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수 ×

(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

-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후 1월간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)

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

마.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율을 납부세금에서 공제 합니다.

○ 적용대상 시설

- 사원용 임대주택, 종업원용 기숙사, 직장보육시설

- 제조·공업·여객운송업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

○ 감면내용

- 취득가액의 7%를 납부할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합니다.

※ 토지 취득가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

바. 주요 세무일정

1) 6월 : 원천징수세액 납부(10일),

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(30일)

2) 7월 : 원천징수세액 납부(10일)

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(25일)

참고문헌 <국세청 발간 "중소·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세금">

박봉수 세무회계사무소

주소 광주 서구 치평동 1187케이원오피스타운 8층 802호

전화 062) 383-3600 팩스 062) 375-6600

H. P. 016-613-7511 이메일 Pbstax@hanmail.net